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 차단 강화, 방사능 검사 강화 및 교대근무체계 개선(2교대→3교대)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(7급 1명, 8급 4명, 9급 3명)을 증원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정원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4,875”를 각각 “4,883”으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,520”을 “4,528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3]

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4,875	4,883	+8
일반직 계	4,875	4,883	+8
3급 또는 4급 이하	4,520	4,528	+8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9